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남궁역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07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남궁역, 강석주, 경기문,
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
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
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
김용일, 김용호, 김재진,
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
김형재, 남창진, 박상혁,
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
박춘선, 박철성, 서상열,
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
심미경, 옥재은, 유만희,
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
윤종복, 이경숙, 이병운,
이영실, 이은림, 이종태,
이종환, 이효원, 임춘대,
정준호, 최민규, 최호정,
허 훈, 홍국표 의원(50명)

1. 제안이유

- 기후변화 및 탄소저감 대응에 따라 가로수 수종 선정시 탄소흡수량이 많은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, 녹지 확충을 위해 도로의 교통섬에 그늘목 식재, 화단 조성 등 다양한 가로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가로수 수종 선정시 환경오염 저감, 기후 조절 기능과 함께 탄소 흡수량이 많은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5조제1항제4호)
- 나. 기후변화 대응, 녹지 확충, 경관 향상 등을 위해 중앙분리대 뿐만 아니라 교통섬에도 그늘목, 녹지대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6조제1항제3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4호 중 “조절”을 “조절, 탄소 흡수”로 한다.

제6조제3호 중 “중앙분리대”를 “중앙분리대, 교통섬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)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환경오염 저감, 기후 <u>조절</u> 등에 맞는 수종</p> <p>5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5조(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조절, 탄소 흡수</u> 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식재 위치) 가로수는 도로의 폭,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.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3. <u>중앙분리대</u> 등 그 밖에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식재 위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중앙분리대, 교통섬</u> ----- ----- -----</p>